

국토교통부, 화재 취약건축물 보강사업 마무리 박차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022.4.21.

정부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12월 말 완료 된다. 제천 복합건축물과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관리법」(2020.5. 시행)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규정이 추가되면서 시작된 이 사업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고자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에 취약한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 즉 3층 이상의 건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로, 총공사비 4,000만 원 이내에서 국가와 해당 지자체가 공사비용의 3분의 1을 지원한다. 건축물의 구조와 형식 등을 고려하여 스프링클러,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등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은 건축물 소유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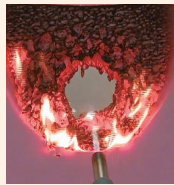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대상 건축물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필로티 구조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	무관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000㎡ 이하)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출처: 국토교통부. (2022). 어린이집·병원 등은 올해 안에 화재안전성능 개선해야 정부 지원 가능. 4월 21일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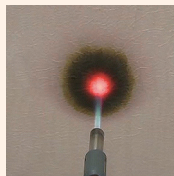
서울시 강서구 강서어린이집 보강 전



가연성 단열재



서울시 강서구 강서어린이집 보강 후



준불연 단열재

출처: 국토교통부. (2022). 어린이집·병원 등은 올해 안에 화재안전성능 개선해야 정부 지원 가능. 4월 21일 보도자료.

2022년까지 대상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보강을 실시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공 사례와 효과를 알리고 대상 건축물 소유주의 신청을 촉구하고자 사업에 참여한 서울시 강서어린이집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강서어린이집은 39명의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로, 2층, 3층, 옥탑이 가연성 외장재인 드라이비트로 건축되어 있어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위험이 높았지만 시공을 통해 화재안전시설로 탈바꿈하였다.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제거하고 준불연 단열재로 보강하는 외장재 교체 시공으로 화재 시 초기진압을 위한 시간을 9분 이상(가스유해성시험 KS F2271 기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